

[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기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
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계약조항

제13조[검수]

- (2) 원고는 각각의 검수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은 피고가 최종 검수를 완료하는 시점에 최종 완료되는 것으로 하며, 검수 최종 완료 시점에서 검수 완료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1)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직·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원고가 이 계약서상의 제품 공급 및 구축의 완료기한(또는 연장된 기간의 완료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성능을 가진 기능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원고가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피고는 위 (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고, 기성율에 따라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 (3) 원고는 계약상 용역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첨부 문서 : 수행내역서】

분쟁사안 및 쟁점

-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전후를 통해 임시폴더보호기능 등을 포함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환경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 및 구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오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예정된 수행기간(2016. 11. 25.)보다 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주요기능인 임시폴더보호기능을 금년 내에 구축 완료할 수 없었고, 그러한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왔던 것이므로, 피고가 2016. 12. 13.에 한 취소통보는, 비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계약 해제 사유로서 원고가 완료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성능을 가진 기능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근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곧바로 1달간 계약취소(해제)를 보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3. 계약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쌍방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 회사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폴더보호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의 여러 이유로 당초 예정한 수행기간을 초과하였고(앞서 본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2, 13, 1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이메일 내용 등), 기간 연장에도 원고가 금년 내 구축완료가 힘들어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고와 협의하고자 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축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보완을 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2016. 12. 11.경 이 사건 계약상 구축 작업을 완성하였다거나 일부 설치된 부분이 피고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계약분쟁, 제작납품계약,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